

산업재해 보상 실무



박 명 순 사무관
[노동부 산재보험과]

I.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의 개요

-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별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보험의 형식을 통하여 위험 부담을 분산, 경감토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유지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케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 산재보험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주에게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 등을 징수하며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재해예방, 재활사업, 장학사업, 생활정착금대부 등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이며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강제보험제도로써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하던 집행업무를 95. 5. 1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수탁하여 현재는 근로복지공단(본부, 6개지역본부, 40개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II. 산재보험 보상 실무

1. 업무상재해란?

- ◎ 업무상재해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각종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 ◎ 업무란 당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일, 즉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관계하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직무상 행하는 일은 물론 그 부수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것" 임.
 - 따라서 근로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자가 행하는 제반행위 즉 작업전·후의 준비 및 마무리행위, 생리적 필요행위,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시의 긴급대피·구조 및 반사적 행위 등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를 포함한다.
- ◎ 업무상재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근로자의 업무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인가, 사회의 경

합법직상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따라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업주 시설물이용중의 재해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2.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의 처리 절차, 방법 및 내용은?

-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생활비성격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며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피재근로자가 치료종결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와 같은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나 지역본부에 필요한 신청서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 보험급여 청구서 또는 신청서는 반드시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주의 확인과 의료기관의 주치의 소견 또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입원요양중인 자로서 제2회 이후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서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연기 신청서·추가상병신청서 등 의학적인 소견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가. 요양급여

- ◎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부상하였거나 질병에 이환되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피재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진료비로서 당해의료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요양보상을 한다.
-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수술·처치·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과보철, 식대 등이다.
- ◎ 청구절차
 -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주확인과 의료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1부는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1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서를 3부 작성하여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후 1부는 회사에 1부는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나. 휴업급여

- ◎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소득 대신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지급액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통상적으로 매월 1회씩 청구하는 것이 편리하며,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한다.

다. 장해급여

- ◎ 장해급여란 업무상재해가 치유되었으나 당해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 ◎ 장해등급은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14등급 141종으로 나누고 있으며, 장해등급 1급~3급 해당자는 연금으로 장해등급 4급~7급 해당자는 연금과 일시금중 선택에 따라 지급 받을수 있으며 8급~14급 해당자는 일시금 지급 대상이다.
- 연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사망 등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자격상실시까지 지급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1~4년분(장해등급 제4급~7급은 1~2년분)의 선급금 청구가 가능하며
- 만약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일수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 장해급여 청구권자는 피재근로자이며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필요시 X-선 필름을 첨부)
- ◎ 13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의하여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계열을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라. 유족급여

- ◎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 ◎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

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하며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 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상순위에 불구하고 유언으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형제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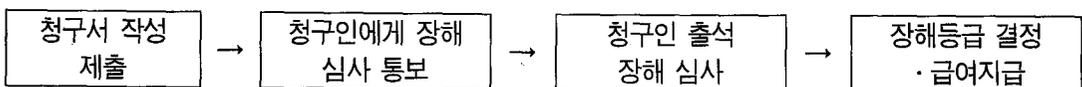
- ◎ 유족보상 연금은 매분기 1회(연간4회 : 2월, 5월, 8월, 11월)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격자)는 근로자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 및 근로자의 사망당시
- 60세 이상인 남편, 부모, 조부모
- 18세 미만인 경우 자녀 또는 손
- 18세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신체장해등급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근로자 사망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 유족급여 지급액

- 유족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보상 연금 : 기본금액으로서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에 연금수급자격자수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가산액은 20%를 한도로 하여 그 합산액은 급여기초연액의 67%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상병보상연금

- ◎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급~3급에 해당될 때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청구에 의하여 해당등



- 사업주확인
- 주치의 소견서 작성
- 청구인 날인

- 공단→청구인

- 공단 자문의사

- 구좌입금
(공단→청구인)

급의 지급일수를 12등분하여 매 월별로 지급함.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월 90.1%)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월 79.7%)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월 70.4%)

- ◎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장의비

- ◎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때에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사. 특별급여제도(민사대불제도)

- ◎ 특별급여제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제1급~3급)가 남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절차의 번거로움과 과도한 소송비용 소요를 방지하는 등 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라이프니찌 계수 적용)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동 지급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 ◎ 특별급여의 종류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 지급요건은

- 업무상재해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어야 하며
-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하여야 한다

4. 평균임금의 산정 및 변동률 증감제도란?

가. 평균임금의 산정

- ◎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초로 이용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있는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그 원리이다

- 따라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실제근무일수가 아닌 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당 금액을 구한다

※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금액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 산전후 휴가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군복무,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평균임금 산정 특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 최저보상제도 :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보상기준을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에는 적용제외)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업무상질병이환자, 사업장이 휴폐업된 경우, 퇴직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노동통계보고서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평균임금의 변동률 증감

- ◎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재해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 재직근로자의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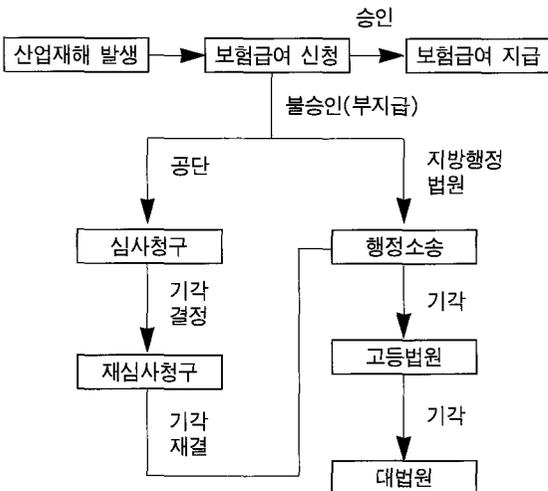
5%이상(5/100를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변동된 때에는 평균임금 증감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판단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 ◎ 장해·유족보상연금 수급자, 휴·폐업 사업장 근로자, 퇴직근로자, 당해사업장에 동일직종근로자가 없는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자동증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최초의 평균임금증감신청서 제출시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단이 매년 직권으로 자동증감해 주고 있다.

IV.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심사제도 (권리구제 제도)

- ◎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 동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의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권리구제 절차도



- 산재심사위원회 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급여 수습권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 다만 행정소송제도는 '98. 3. 1부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V. 산재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1.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 ◎ 지급대상
 - 산재사망근로자·장해등급 1~7급해당자·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자녀
- ◎ 지원범위 : 중·고등학교 학생 학비 전액

2.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 ◎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생활정착금을 대부하여 주고 있다.
- ◎ 대부대상 : 산재사망자 유족, 장해등급 1~7급해당자·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 대부한도 : 담보대부 1,000만원, 신용대부 500만원
- ◎ 대부조건 : 연리6%,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3. 산재근로자 대학생자녀 학자금대부사업

- ◎ 대부대상 : 산재사망근로자·장해등급 1~7급해당자·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자녀
- ◎ 대부한도액 : 1학기 150만원
- ◎ 대부조건 : 연리 5%, 졸업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